

의안번호	2213298
의 퇴 인	정준호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10.
추 계 번호	25C5356
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아동수당의 대상자를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, 월 수당액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1.7조원(연평균 4.3조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조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아동수당 대상자 확대 및 지급 단가 인상(안 제4조)	4.9	4.6	4.3	4.0	3.8	21.7	4.3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(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)	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함 ※ 현행: 8세 미만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조(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)	○	과거 지원 대상자 수 및 지원액 추세를 고려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- 아동수당 소요재정 중 급여지출 외에 제도운영비 등은 개정안 시행 후에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, 지급 단가를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본 추계서는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에서 현행 제도 유지 시 발생하는 총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
- (대상자 수) 통계청 「장래인구추계」¹⁾상 8세 미만 아동 수(현행 제도 유지)와 13세 미만 아동 수(개정안)를 적용하되 2025년 0세인 코호트에 대해서는 2024년 상반기부터 2025년 8월까지의 출생아 수 증가를 반영

[표 2]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수

(단위: 만명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
8세 미만	207	198	193	190	190
13세 미만	410	389	369	351	338

자료: 통계청의 「장래인구추계」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1) 2023년 12월 공표 통계

- (수당액 및 지급기간) 현행 제도 유지 시 월 10만원, 개정안 시행 시 월 15만원을 연간 12회(12개월)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결과, 아동수당의 대상자를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, 월 수당액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1.7조원(연평균 4.3조원)으로 추계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조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현행제도 유지 시 아동수당 총재정소요(A)	2.5	2.4	2.3	2.3	2.3	11.7	2.3
개정안에 따른 아동수당 총재정소요(B)	7.4	7.0	6.6	6.3	6.1	33.4	6.7
추가재정소요(B-A)	4.9	4.6	4.3	4.0	3.8	21.7	4.3

주: 제도운영비를 제외한 아동수당급여(국비·지방비 합산)에 대한 재정소요만 추계

IV. 부대의견

- 해당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